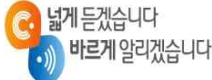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	보 도 자 료		
배포일시		2014. 6. 5(목) 총 3매(본문 3)		
담당 부서	도시정책과	담 당 자	·도시정책과장 최임락, 사무관 박희민 주무관 안운상 ☎ (044)201-3706, 3708, 3713	
보 도 일 시		2014년 6월 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8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녹지·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, 시설 증설 가능해져

－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.21.까지 입법예고 －

□ **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%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.**

- A기업의 경우를 보면, 당초 건폐율이 40%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%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%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다.

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,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%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국토계획법'이라 함) **시행령 일부개정안**을 마련하여 **9일부터 40일간**(기간 6.9.~7.21.) **입법예고** 한다.

□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**현장간담회, 지자체정책협의회, 규제개혁신문고**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·검토하여 **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**,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**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%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.**

- 이와 함께,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(용도, 건폐율 등)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**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**할 수 있게 된다.

* 이 때,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

- 또한,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**자연취락지구**에 **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**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현행)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, 병원,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

- 그 밖에, **개발행위허가**를 받지 않아도 되는 **공작물의 범위를 확대***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**인허가 절차를 간소화**하고,

*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·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→50㎡, 그 밖의 지역(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)은 75→150㎡로 확대

- 비도시지역에 **지구단위계획***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**보전 관리지역**을 전체 면적의 10~20% 이하로 **제한하던 것을 폐지**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.

*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, 건축계획, 환경,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의 하나임

□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**7월 21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**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 /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(전화 : 044-201-3708 / 3713, 팩스 044-201-5569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희민 사무관(☎ 044-201-37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